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34
----------	------

2020년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3월 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출요지

1. 제출이유

- 가. 장애인 학대 등 피해 장애인에게 긴급분리에 따른 주거 및 양질의 상담·의료·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 나. 피해 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컴퓨터 설치·운영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 ('20. 4. 1. ~ '25. 3. 31.)

○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시설개요

- 소재지 : 마포구 대흥동 20-4

- 건축현황 : 1984. 6. 22건축('19. 11 .1. 장애인복지정책과 일반재산 편입)

- 건축규모 : 건축면적 58.1㎡, 연면적 151.47㎡(지하 1층 ~ 지상2층)

- 점유면적 : 80.89㎡(대지 : 사유지 1053.9㎡)



○ 조직운영

- 종사인력 : 6명(시설장1명, 생활지도원등 종사자 5명)

- 입소정원 : 8명

- 위탁사무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임시보호 및 생활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지 지원

-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쉼터 운영 기준에 적합한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하여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사회복지를 지원하고자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민간위탁으로 선정하고자 함.

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0.1.29.)

-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4.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560백만원(전액시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장애인복지법」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개요 및 제출 경위

가.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1)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

나. 제출경위

- 현재 집행부는 '15년부터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단기보호시설내에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중이며 쉼터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기 운영 중인 피해장애인 쉼터 현황>

○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4
- 규 모 : 행복플러스 단기거주시설과 공용
- 운영인력
 - 종사자 : 센터장 1명, 직원2명
 - 입소정원 : 4명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승가원)
- 공간구성



- '20년 예산 : 12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한편, '17년8월 장애인복지법 개정²⁾에 따라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에 설치 운영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설²⁾되었는데, 현재 운영중인 쉼터는 분리된 별도 공간확보, 면적 기준 등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개정 장애인복지법 설치 운영 기준을 충족한 쉼터를 추가 설치 운영코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³⁾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³⁾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⁴⁾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시장이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

2) '17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신설 내용

- 시설 : (기존)단기거주시설 공동이용 → (개정)분리된 별도 공간(66㎡이상) 확보

- 인력 : (기존)종사자 2명 → (개정)6명(560백만원) 확보

3)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 「민간위탁조례」 제4조⁵⁾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 직업재활 훈련 등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피해 장애인 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⁶⁾에서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을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장애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6)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종합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위탁 사무는 서울시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긴급분리에 따른 주거 및 양질의 상담·의료·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하우를 지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기존 쉼터 운영평가에서 지적되었던 ① 긴급 입소에 따른 사전정보(질환 및 장애특성) 부족과 이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 ② 쉼터 이용자의 복합적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334
----------	------

제출년월일 : 2020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장애인 학대 등 피해장애인에게 긴급분리에 따른 주거 및 양질의 상담·의료·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운영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 ('20.4.1~'25.3.31.)
- 위탁사무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임시보호 및 생활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지 지원
-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사업예산 : 560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상 운영기준에 맞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4.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지 및 자립 지원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560백만원(전액시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 확대 설치·운영 계획 1부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이재라 (☎ 2133-7363)

붙임 사업추진 계획서

		시 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318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일자	2019.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협 조				



- 서울시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
민 간 위 탁 추 진 변 경 계 획

2019.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변경 계획

피해장애인 쉼터로 활용할 적정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기 민간위탁 심의완료된 사무형 위탁운영을 시설형 위탁운영으로
변경한 후 전문성 있는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공모하고자 함.

I 민간위탁 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인권침해장애인 쉼터 확대·설치 운영 계획(2019.10.4.)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상 운영기준에 맞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 시설 : 단기거주시설 공동이용 → 분리된 별도 공간(66㎡이상)확보
 - 인력 : 종사자 2명(120백만원) → 6명(560백만원) 확보
- 사무형 위탁으로 민간위탁심의완료(조직담당관-13453,2019.10.18.)된 추진계획을 시유지건물 확보로 시설형 위탁으로 민간위탁 재심의 의뢰

□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시설형)
- 위탁기간 : 협약일부터 5년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시설개요
 - 소 재 지 : 마포구 대흥동 20-4
 - 건축현황 : 1984.6.22.건축('19.11.1자 장애인복지정책과 일반재산편입)
 - 건축규모 : 건축면적 58.1 m^2 , 연면적 151.47 m^2 (지하 1층 ~ 지상 2층)
 - 점유면적 : 80.89 m^2 (대지 : 사유지 1053.9 m^2)
- 위탁사무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임시보호 및 생활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
 -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방법 : 수탁법인 공개모집
- 사업예산 : 560백만원

Ⅱ 민간위탁 추진 변경 계획

□ 민간위탁 추진 변경개요

- 변경내용 : 위탁유형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사무형 위탁	시설형 위탁

- 변경사유 : 피해장애인 쉼터공간으로 사용 할 사유지 건물
(마포구 대흥동 20-4) 확보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①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공 고 : 의회 보고 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 공고내용 : 수탁기관 선정 공고 (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신청접수 : '20.3월
- 제출서류
 - ㉠ 수탁신청서 ㉡ 타시설 운영실적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첨부)
 - ㉣ 법인정관 ㉤ 법인허가증 사본 ㉥ 법인자산 현황 ㉦ 사업운영계획 등

② 수탁자 선정심사 : '20.3월

- 위원구성 : 9명 이내
- 내 용 : 공모신청자 제안서 평가 등 운영자 선정
- 방 법 :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포함)
- 심의결과 : 운영 선정 대상자에 대한 계약 체결

③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20.4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④ 협약체결 및 공증 : '20.4월말까지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민간위탁 사항

- 위탁사무 : 「피해장애인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임시보호 및 생활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 사회복지 지원
 -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기간 : 협약일부터 5년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중략)...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 지원사항 :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 지원예산 : 560백만원

Ⅲ

소요 예산

□ 민간위탁금 : 560,000천원

- 시설안전점검 및 리모델링비 : 278백만원
- 인건비 : 195백만원(6명×6개월 = 195백만원)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연금, 사회보험등
- 사업운영비 : 87백만원
 - 공공요금, 주,부식비,피복비, 의료지원비등

IV

향후 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20. 1.
- 시의회 동의 : '20. 2.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 3.
- 수탁기관 선정 : '20. 3.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20. 4.
- 협약체결 및 공증 : '20. 4.